



수험소식 및 수험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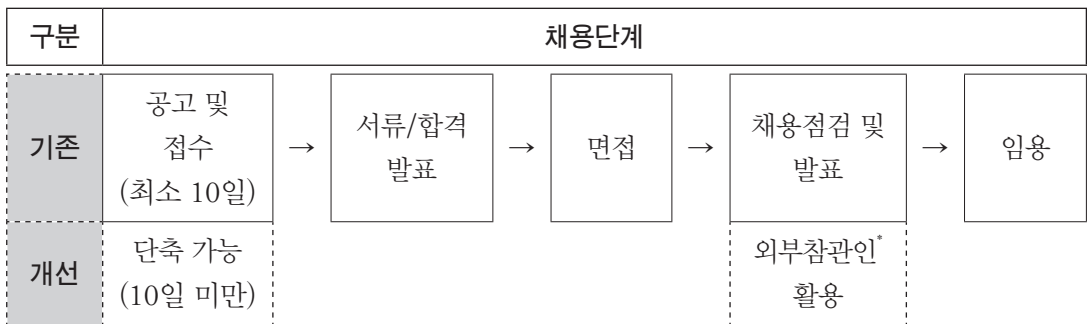
## 공무원 채용기간 단축 등 현안 대응 역량 강화

### - 경력채용 기간 단축, 임용 후 퇴직 시에도 후순위자 추가합격 등 -

#### I. 개요

1. 코로나19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. 또한,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경력채용 후 순위자 추가합격이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게 된다.
2. 인사혁신처(처장 황서종)와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1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「공무원임용령」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,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, 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.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COVID-19),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정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3. 올 하반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4. 먼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 채용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다.
  - (1) 현행 최소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공고기간을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 기간은 단축할 수 있게 된다.

#### 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진행절차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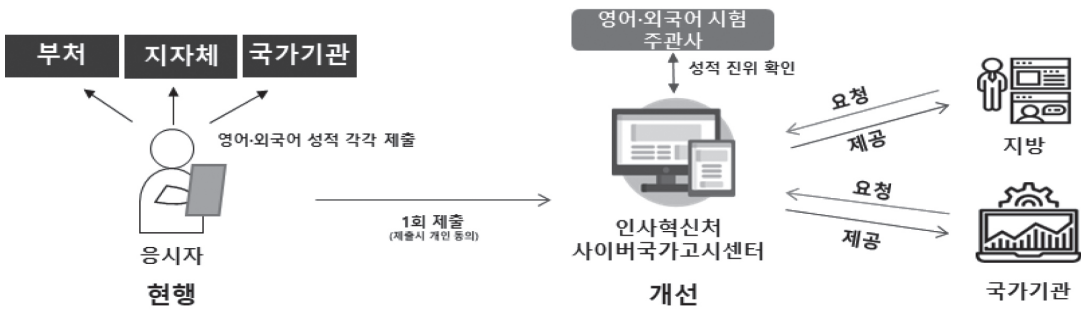


\*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외부참관인 제도 도입, 제도 운영 시 채용점검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

(2) 또한, 경력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내인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기존 후순위자가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.

5.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·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각 부처이외에도 지자체, 다른 국가 기관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여러 채용시험을 동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경감된다. 이 외에도 데이터 직류와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기존 직렬·직류 및 관련 시험과목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다.

**【 영어·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활용절차 개선 】**



6.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“이번 개정은 정부가 재난 등 긴급한 상황과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”라며, “정부 각 부처가 이를 전문 인력 채용과 재배치 등에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**II. 개정안 주요 내용**

현행	개정안
①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 단축 <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>	
10일 이상 공고	재난 등 긴급한 인력충원 필요 시 인사혁신처장(행정안전부장관)과 협의 후 공고기간 단축 가능

② 임용 후 의원면직 시 추가합격 가능 <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>

경채 임용 전 임용포기 시 추가합격 가능  
(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)

추가 임용 후 퇴직 시에도  
6개월 이내 추가 합격 가능

③ 영어·외국어·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위임 <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·3의2·4>

기준등급 및 인정기간 규정

인정기간은 고시로 위임

④ 영어·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다른 기관 제공근거 마련 <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>

근거 없음

인사처에 1회 제출 후  
다른 기관 시험에서 활용 가능

⑤ 외무공무원 일반직 채용 시 시험면제 확대 <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>

(현행) 외무직(외교통상직렬)만  
일반직 채용시 시험면제

추가 외무영사  
외교정보기술

⑥ 직렬·직류 개편 <공무원임용령·공무원임용시험령·연구지도직규정 별표1,  
지방공무원 임용령·지방연구지도직규정 별표1>

-

신설 데이터 직류  
방재안전연구 직렬  
통합 일반수산 통합  
(←수산물제조, 수산증식, 수산물검사) 등